

정답 및 해설

문 1] 정답 ④

- ① (O) 대판 2016.01.28, 2015도15669
- ② (O) 대판 2017.5.30, 2015도15398
- ③ (O) 대결 2008.7.24, 2008어4
- ④ (X)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7.5.31, 2013도8389)

문 2] 정답 ②

- ① (O) 대판 1984.6.26, 84도831
- ② (X)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 ③ (O) 제17조
- ④ (O) 대판 1990.10.16, 90도1786

문 3] 정답 ④

- ① (O) 대판 2001.1.5, 99도4101
- ② (O) 대판 2013.1.31, 2012도3475
- ③ (O) 대판 1985.5.28, 85도588
- ④ (X)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문 4] 정답 ③

- ① (O) 대판 2017.6.29, 2017도3196
- ② (O) 제15조 제2항
- ③ (X)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장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④ (O) 대판 1993.8.24, 93도1674

문 5] 정답 ④

- ㉠ (O) 대판 2008.4.24, 2006도9089
- ㉡ (O) 대판 2008.4.24, 2006도9089
- ㉢ (O) 대판 2015.09.10, 2015도6980
- ㉣ (O) 대판 2002.5.10, 2000도2251

문 6] 정답 ③

- ① (O) 대판 2006.9.14, 2004도6432
- ② (O) 옳음
- ③ (X)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3.26, 98도3030). ※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 ④ (O) 대판 1966.12.6, 66도1317

문 7] 정답 ②

- ① (O) 대판 1984.12.26, 82도1373
- ② (X)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17, 2016도13912).
- ③ (O) 대판 2015.7.23, 2015도3080
- ④ (O) 대판 2011.4.28, 2009도3642

문 8] 정답 ④

- ① (O) 대판 1997.4.17, 96도3377
- ② (O) 대판 2017.3.15, 2016도19659
- ③ (O) 대판 2013.9.12, 2012도2744
- ④ (X)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08.10.23, 2008도4852).

문 9] 정답 ③

- ㉠ (O) 대판 2017.5.30, 2016도21713
 ㉡ (X)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분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12.11, 2014도10036)
 ㉢ (O) 대판 2012.10.11, 2012도1895

문 10] 정답 ①

- ① (X)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제81조).
 ② (O) 제82조
 ③ (O) 제79조 제2항
 ④ (O) 제80조

문 11] 정답 ④

- ① (O)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 (O) 대판 1999.1.26, 98도3732
 ③ (O) 대판 1982.10.12, 81도2621
 ④ (X)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분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84.11.27, 84도2263).

문 12] 정답 ②

- ① (O) 제312조 제1항
 ②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③ (O) 제312조 제2항
 ④ (O) 대판 2003.5.13, 2002도7420

문 13] 정답 ①

- ① (O) 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② (X)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대판 2005.4.15, 2004도8701).
 ③ (X)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④ (X)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

문 14] 정답 ②

- ① (O) 대판 1992.7.28, 92도917
 ② (X)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판 1994.11.25, 94도2432)
 ③ (O) 대판 2011.4.14, 2011도300
 ④ (O) 대판 1994.8.12, 94도1487

문 15] 정답 ④

- ① (X)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11.2.24, 2010도17512)
 ③ (X)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O) 대판 2011.2.24, 2010도17512

문 16] 정답 ③

- ① (O) 대판 2011.3.24, 2010도17396
 ② (O) 대판 2013.2.21, 2010도10500
 ③ (X)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5.0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④ (O) 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문 17] **정답** ②

- ㉠ (X)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 ㉡ (O)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제237조의2).
- ㉢ (O) 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 ㉣ (O) 대판 2008.4.10, 2008도1013
- ㉤ (X)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10.23, 2008도5200).

문 18] **정답** ③

- ① (X), ② (X)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판 2000.1.21, 99도4940).
- ③ (O) 대판 2014.01.29, 2013도13937
- ④ (X)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판 2001.9.18, 2000도5438).

문 19] **정답** ④

- ㉠ (O) 대판 2011.7.28, 2009도11104
- ㉡ (O) 대판 2003.11.13, 2001도7045
- ㉢ (O) 대판 2011.2.10, 2010도15986

문 20] **정답** ①

- ① (O) 대판 1987.06.09, 87도1029

- ② (X)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대판 1991.10.11, 91도1950)
- ③ (X)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4852).
- ④ (X)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2.24, 96도599).